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10. 5 선고 2020가단3764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B

변 론 종 결 2022. 8. 24.

판 결 선 고 2022. 10. 5.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9. 6. 17.자 합의해제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6. 17. 접수 제28480호로 말소등기 된 각 같은
등기소 2018. 12. 19. 접수 제56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9. 6. 17.자 합의해제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각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9. 6. 18. 접수 제7634호로 말소등기 된 각 같은
등기소 2018. 12. 19. 접수 제164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는 1999. 6. 15. 이천시 C, D, E 등 3필지 및 이천시 F 토지를 취득한 후, 2011. 6. 1. 위 F 토지는 G에게 매도하였고, 2018. 8. 30. 위 C 토지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양도 토지’라 한다)를 H 외 2인에게 755,000,000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B는 2018. 10. 31.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866,463,811원, 양도가액을 755,000,000원으로 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5.부터 2019. 7. 11.까지 위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양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2019. 9. 1. B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110,919,014원, 양도가액을 755,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42,444,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B는 2020. 8. 4. 기준 266,083,190원(가산금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라. B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2. 2. 이의신청을 거쳐 2020. 5.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1. 3. 24. 기각되었다.

마. B는 2021. 6. 7.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652호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2. 6. 13. B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22. 6. 29.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08. 5.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을 특정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4. 1.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아들인 B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12. 19. 접수 제56496호로, 이 사건 3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8. 12. 19. 접수

제16414호로 각 2018. 12.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B는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9. 6. 17. 접수 제28480호로, 이 사건 3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9. 6. 18. 접수 제7634호로 각 2019. 6. 17. 합의해제(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자. 이 사건 해제계약 당시 B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B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해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말소등기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장남인 B에게 증여하였다가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해제계약을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해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 즉 양도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토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98451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B가 2018. 8. 30. 이 사건 양도 토지를 H 외 2인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해제계약 전이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8. 8. 31.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되었고, 그 후 2019. 9.경 B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써 조세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538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해제계약 당시 B가 무자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아래 다.항 기재 ①, ②항의 사정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해제계약에 따라 적극재산을 처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고,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해제계약은 B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거나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악의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해제계약이 사해행위이고 B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피고는 이 사건 해제계약은 B를 비롯한 자녀들 간의 분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2018. 10. 31.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무렵이 지난 2018. 12.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은 점, ② 그 후 B는 2019. 4. 말경 남양주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양도에 관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았고, 그 직후인 2019. 6. 17. 이 사건 해제계약이 이루어진 점, ③ 피고와 B는 모자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해제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6. 17. 접수 제28480호로 말소등기 된 같은 등기소 2018. 12. 19. 접수 제5649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이 사건 3 내지 13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2019. 6. 18. 접수 제7634호로 말소등기 된 같은 등기소 2018. 12. 19. 접수 제1641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아영

